

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[별지 제3호서식]

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20-163호

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

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2020년 12월 31 일



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

| 대상 시설물 | | | 지정(해제) 사유 | 안전점검 ·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| 비고 |
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---|
| 시설물 명칭 | 소재지 | 관리주체 (소유자) | | | |
| 동일빌라 | 자양동 474-4 | 문XX 외 12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일부 보에서 다소 큰 균열 발생하여 계속적인 확인 필요노후화로 인해 벽 체에 균열이 다수 발생하여 보수가 필 요하고 지속적인 주 의 관찰이 요구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| C등급 |
| 신향빌라 1동 | 중곡동 18-24 | 세암 CMS (동대표 회장 : 김XX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보의 전단 균열과 슬래브에서 다수의 균열 및 철근 노출 등이 발생하여 이 에 대한 보수, 보강 및 주의 관찰 필요주차장에 대한 정 밀 안전진단이 필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1년에 2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 실시 등 | C등급 |
| 신향빌라 2동 | | | C등급 | | |
| 신향빌라 3동 | | | C등급 | | |
| 신향빌라 5동 | | | C등급 | | |
| 신향빌라 6동 | | | C등급 | | |
| 신향빌라 7동 | | | C등급 | | |
| 신향빌라 8동 | | | C등급 | | |
| 신향빌라 9동 | | | C등급 | | |